제962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철강재 품질관리 절차 및 시험기준 신설(신설) ㅇ 철강재 품질관리 절차 구체화 및 시험기준 추가(지침 제55조, 제56조, 별표2, 별지 제15호 서식) –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·검사 절차 구체화 및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의무 명시 –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중 ‘철강구조물공사’에 ‘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’, ‘가설기자재’에 ‘H형강 말뚝’ 시험 추가 – 철강재에 대한 KS 인증 여부 확인 또는 비KS 자재에 대한 시험·검사 여부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 ▶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6조,제55조 2.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(강화) ㅇ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 – ‘단위수량 시험’ 의무화 및 시험빈도 상향 ▶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	1.비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구조물 기초 지지력 시험 강화(강화) ㅇ 구조물 기초 지지력 시험 기준 정비(별표2) – 말뚝기초의 정재하·동재하 시험 의무화 및 빈도 규정 :필요시 → 전체 말뚝 수량 1% 이상(100개 미만 시 최소 1개) 등 – 일선 현장에서 지지력이 큰 대구경 말뚝에 대해 많이 쓰이는 '양방향 재하시험'을 시험 항목에 추가 (KS 기준에는 시험방법 기반영) ▶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4.보 · 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시험빈도 상향(강화) ㅇ 보·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시험빈도 조정(별표2) – 한국산업표준(KS) 기준 개정(' 22.7월)에 맞춰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빈도 상향 조정 – 모든 블록 겉모양·치수 : 10,000개 미만 시 5개 → 10개 등 ▶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공사감독자 등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(강화) ㅇ 공사감독자 등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 – 시험성적서 CALS 입력 여부 확인, 정기점검 동행 등 ▶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,제5조	
2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무시동 히터의 안전기준(신설) ㅇ '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(기계금속 분류)에 신설 ▶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	1.비중요
3	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무시동 히터의 안전기준(신설) ㅇ '무시동히터'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능, 표시사항 등을 규정한 안전기준 제정 – (안전성능)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, 안전 요건 및 시험·검사방법 등 규정 – (표시사항) 명판표시, 취급표시, 취급주의 표시 ▶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,부속서26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감리자 업무 추가(신설) ㅇ 감리자는 하도급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하수급인의 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함 – 시공자가 하도급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확인결과와 다르게 공사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ㅇ 감리자는 보고서 제출 또는 사용검사 신청 시 하수급인 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감리의견서를 첨부해야 함 ㅇ 감리자는 적정성 확인 결과를 기록관리 해야 함 ▶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3조의2,제24조,제28조	1.비중요
5	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교육기관의 인정기준(신설) ㅇ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대상 범위 및 인정기준 ▶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교육내용 및 교육시간(신설) ㅇ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지정 ▶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3.교육운영에 관한 사항(신설) ㅇ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승인 및 교육실시, 교육수료 후 보고 및 수료사항 보관의무 등 ▶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,제11조제12조제9조	
6	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착공신고, 하자보수 등 대상에 화재알림설비 추가(강화) ㅇ 화재알림설비 설치시,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▲착공신고 ▲하자보수 ▲소방기술자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,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▲공사감리자를 필수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 ▶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,제4조제6조제10조	1.비중요